

의안번호	2220215
의 퇴 인	최은석 의원
회 답 일	2026. 9. 23.
추 계 번호	26A38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 장애인복지단체, 6.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36억 7,700만원, 2029년 36억 7,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10억 3,100만원(연평균 36억 7,700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사용료 등의 감면 실적에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감면실적이 없었던 항목에서 감면이 발생하는 등 실제 감면실적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별표 제16호)	315	315	315	945	315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별표 제141호)	3,356	3,356	3,356	10,068	3,356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별표 제161호)	5	5	5	15	5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별표 제171호)	1	1	1	3	1
합 계	3,677	3,677	3,677	11,031	3,677

주: 1.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 제3호 (「결핵예방법」 제24조)	○ 국가가 대한결핵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2	안 별표 제16호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국가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별표 제7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4	안 별표 제134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5	안 별표 제1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6	안 별표 제13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 국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7	안 별표 제140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 국가가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8	안 별표 제141호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국가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9	안 별표 제161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국가가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10	안 별표 제17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 국가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026.12.31.→2029.12.31.)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별표 제3호 (「결핵예방법」 제24조)	×	○ 최근 3년(2023~2025년)간 사용료 등의 감면실적이 없으므로 향후에도 감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
2	안 별표 제16호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3	안 별표 제7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	○ 최근 2년(2024~2025년)간 사용료 등의 감면실적이 없으므로 향후에도 감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
4	안 별표 제134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최근 3년(2023~2025년)간 사용료 등의 감면실적이 없으므로 향후에도 감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
5	안 별표 제1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	×	
6	안 별표 제13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	×	
7	안 별표 제140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	×	
8	안 별표 제141호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	안 별표 제161호 (「향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10	안 별표 제17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대상은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액(재정수입 감소액)이며, 최근 3년(2023~2025년)간 사용료등 감면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함

- 최근 3년(별표 제71호의 경우 최근 2년)간 사용료등의 감면실적이 없는 다음의 항목은 향후에도 감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별표 제3호) 「결핵예방법」 제24조에 따라 대한결핵협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 (별표 제7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 (별표 제134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 (별표 제1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에 따라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 (별표 제13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6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 (별표 제140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의 감면
- 감면실적이 있는 항목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액(별표 제171호는 2025년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별표 제16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은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3억 1,5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별표 제141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은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33억 5,6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별표 제16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은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액(5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별표 제17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감면실적이 없어 2025년 감면실적(1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과 현행 별표의 적용기한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안 별표 제16호)

-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7년 3억 1,500백만원, 2029년 3억 1,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9억 4,500만원(연평균 3억 1,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감면실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실적은 2023년 2억 7,500만원에서 2025년 3억 3,500만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2]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실적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사용료등 감면 실적	275	336	335	945	335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액(3억 1,5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표 3] 국가유공자등단체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재정수입 감소액	315	315	315	945	315

나.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안 별표 제141호)

-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7년 33억 5,600만원, 2029년 33억 5,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00억 6,800만원(연평균 33억 5,6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감면실적)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실적은 2023년 33억 7,000만원에서 2025년 35억 600만원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4]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실적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사용료등 감면 실적	3,370	3,192	3,506	10,068	3,356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액(33억 5,6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표 5]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재정수입 감소액	3,356	3,356	3,356	10,068	3,356

다.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안 별표 제161호)

-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7년 500만원, 2029년 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500만원(연평균 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감면실적)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실적은 2023년 4백만원, 2024년 400만원, 2025년 700만원으로 나타남

[표 6] 최근 3년간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실적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사용료등 감면 실적	4	4	7	15	5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감면실적의 연평균액(5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표 7]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재정수입 감소액	5	5	5	15	5

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안 별표 제171호)

-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7년 100만원, 2029년 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300만원(연평균 1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감면실적)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실적은 2023년과 2024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5년 1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8] 최근 3년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실적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계
사용료등 감면 실적	0	0	1	1

자료: 재정경제부 답변자료

-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은 2025년 감면실적(1백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표 9]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 2027~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재정수입 감소액	1	1	1	3	1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감면실적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향후 감면실적이 없었던 항목에서 감면이 발생하는 등 실제 감면실적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